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1조의2의 요약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주식· 부동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유전개발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이는 외부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산입과 대응되는 개념임).
- 배당가능이익=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제외 : 투자회사는 반영)⊕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이월결손금(전기이월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이익준비금
- 지급배당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법인 : 비과세되는 배당
 - 사모방식 설립법인
 -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 소유법인
 -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가 동업기업으로서 비과세되는 경우 동업자가 모두 과세되면 공제 적용함.
- 소득공제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

① 본 조의 개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문화사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그리고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외자유치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지원과 관련해 조달자금에 대해 배당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일반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타인자본금융비용)의 손금산입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채무제표상, 즉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제외 : 그러나 투자회사는 반영)에서 이월이익잉여금(유가증권평가이익 제외)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유가증권평가이익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며, 여기에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배당이나 사모방식 설립법인, 사실상 개인 1인 회사로 운영되는 회사 등의 지급배당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당받은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모두 과세되면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배당가능이익×90%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외부주주 등에게 배당할 경우만 소득공제하는데 소득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배당가능이익은 실질적 배당가능확보액을 말하는데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 제외 : 그러나 투자회사는 반영)에 이월 이익잉여금(유가증권평가이익 제외)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유가증권 평가이익 제외)을 공제한 금액에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즉 배당 가능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text{배당가능이익} = \text{당기순이익} + \text{이월이익잉여금} - \text{이월결손금} - \text{이익준비금}$$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3. 31 개정)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③ 명목회사의 요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이 개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명목회사와 동일하게 상법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라도 법인의 사업상 이익 등의 실질적 이전이 단순히 통과 경유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시 소득공제하고 있다.

명목요건은 다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9. 2. 4 개정)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2010. 2. 18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10. 2. 18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개정)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2010. 12. 30 신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2008. 3. 31 개정)

- 1. 정 관
- 2. 삭 제 (2006. 7. 5)
-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④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업기업의 과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일기업으로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⑤ **비과세되는 배당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 제51조의2제2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세법상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아예 비과세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실상 개인 1인 회사로 운영되는 회사(95% 이상 단독출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